

—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당직수당지급에 관하여 종전 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당지급근거를 신설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
(안 제7조제4항)
- 조례의 시행일을 2004년 1월 1일로 함 (부칙)

4. 참고사항

-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7조
- 2004 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

5. 검토의견

-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당직수당(일·숙직수당) 기준액은 자치단체가 당직시설상태, 당직근무인력, 근무형태 등 실비를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,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